# 의사 조력자살 허용의 필요성

철도경영학과 202310281 김나경

## 1. 서론

안락사는 시술 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는 의사 조력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방법이다.[1] 약품의 처방과 준비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의사가 직접 주사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사를 맞으며 자살기계와 연결된 것이기에 의사는 안락사의 주체에서 책임을 피해가는 방법인 것이다.[2]

한국은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좁은 범위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의사 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사회 병리적 상황들과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의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자살 허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3]

최근에 안락사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소식이 전해졌다.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이다. 불치병 환자 중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에서 견디기 힘든 경우 만 12세 이상에 대해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그런데 2023년 5월 네덜란드는 한발 더 나아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다.[4]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의료인의 도움에 의한 '의사 조력자살' 허용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그다음 의사 조력자살을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을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 2. 본론

### 2-1. 다른 사람을 살릴 가능성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경우 장기기증이 활발해진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평균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락사가 허용되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나 일부 장기가 정상인 시한부 환자의 경우 당장 장기이식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증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는데,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한 사례가 있다.[5]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이식을 해줌으로써

---

1) 리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와 안락사의 형태 그리고 의사조력자살, 오늘도 글로소득, 2021년 11월 1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giruya/222572391536.

2) 박상은, 의사조력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일보, 2022년 8월 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563#share#share.

3)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482호(2019), pp. 143-162.

4) 김채현, "네덜란드, 1~11세 어린이들 안락사 허용한다", 서울신문, 2023년 4월 17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7500001.

더 많은 사회적 효용성을 낳을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도 본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6]

2-2. 적극적 안락사 허용이 요청되는 통계 분석적 근거

우리 국민의 다수가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 이미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39.1%에 불과하고, 56.2%의 찬성 의사를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 긍정 입장이 국민의 60%를 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63.3%가 '가능한 한 오래 살다 죽는 것'을 나쁜 죽음의 대표적 사례로 생각한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건강수명 73.2세 이후 육체적 혹은 심리적 고통 속에서 호흡하며 단지 시간만 보내는 삶은 진정으로 존엄한 삶이 아니고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도 역시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죽은 후의 상황은 좋은 죽음의 중요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좋은 죽음이 되려면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문항에 90.2%가 동의하고 있다. [7]

3. 반론/재반론

3-1. 반론

안락사의 법적 허용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기본권적 논거는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보통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생명권은 이른바 '불가양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 생명권은 다른 기본권의 향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생명권 주체는 이 권리의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권도 갖지 못한다는 이해이다. 따라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다. [8]

3-2. 재반론

우리는 생명권을 해석할 때, 생명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무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헌법에 생명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는 생명권을 한 가지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 생명권은 말 그대로 권리로써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 않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생명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바탕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한 삶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하고 실질적인 생명의 보호라 할 것이다.[9]

---

5) soyabean2006,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찬성, 반대), read, write, review, 2021년 9월 29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soyabean2006/222520545459.

6) 공부덕후 헨리, 안락사 찬성 반대 근거 정리, 헨리의 하루공부, 2023년 1월 2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akmaabt/222997500957.

7)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482호(2019), pp. 143-162.

8) 조한상, 이주희,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9집(2013), pp. 63-90.

9) 전혜, "안락사 토론 찬성측 반론 자료", Piano 블로그, 2018년 5월 11일 수정, 2023년 5월 18일 접

4. 결론

지금까지 적극적 안락사인 '의사 조력자살'에 대하여 삶의 질과 통계적 분석을 근거로 찬성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삶의 질에서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근거로 들었고, 통계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의사 조력자살 반대 측의 생명권 입장을 자기결정권을 들어 재반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과 국회는 공조하여 이들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전문적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후속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 입법에 대한 충분한 참조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는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며,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되고 사랑으로 각성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웰빙과 웰다잉이 조화된 진정한 생명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10)]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서구 유럽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문화는 유산이나 치료비 부담을 원인으로 한 안락사의 남용 위험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관련 이슈가 등장했을 때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며 사그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의사 조력자살 허용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안락사 유형, 예컨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부터 단계적으로 법제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안락사와 관련된 사회 전반의 고민과 의사소통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5. 참고문헌

이문호,「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482호(2019), pp. 143-162.
이종원,「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철학탐구』,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철학탐구 21(2007), pp. 155-187.
조한상, 이주희,「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법학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9집(2013), pp. 63-90.
전혜, "안락사 토론 찬성측 반론 자료", Piano 블로그, 2018년 5월 11일 수정, 2023년 5월 18일 접속, https://m.blog.naver.com/ten_daikon/221272921861.
김채현, "네덜란드, 1~11세 어린이들 안락사 허용한다", 서울신문, 2023년 4월 17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

속, https://m.blog.naver.com/ten_daikon/221272921861.

10) 이문호,「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482호(2019), pp. 143-162.

11) 조한상, 이주희,「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법학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49집(2013), pp. 63-9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7500001.
박상은, 의사조력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일보, 2022년 8월 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563#share#share.
리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와 안락사의 형태 그리고 의사조력자살, 오늘도 글로소득, 2021년 11월 1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giruya/222572391536.
soyabean2006,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찬성, 반대), read, write, review, 2021년 9월 29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soyabean2006/222520545459.
공부덕후 헨리, 안락사 찬성 반대 근거 정리, 헨리의 하루공부, 2023년 1월 28일 수정,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s://blog.naver.com/akmaabt/222997500957.